

구상금 (식중독관련)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6가소 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구상금
원 고	국민건강보험공단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2016. 8. 5.	비 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천○○고등학교 학생들은 재학중이던 2013. 9. 23. 학교급식으로 제공된 치킨텐더또띠아를 먹고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집단발병되어 치료를 받았고, 이 사고로 인천○○고등학교는 조리과정이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- 원고는 2013. 9. 28.부터 원고의 지정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의 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288,67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80,70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요양급여비 207,970원을 요양기관 등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-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교내의 환경과 식기·식품·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·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, 피고 인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 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,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면서 소 제기 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		
청구취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,97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2013.11. 28.부터 기산하여 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3.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. <p>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</p>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2016. 7. 18. 이행권고 결정을 함 		